

급감하는 프랑스의 노동분쟁



황재후 (프랑스 파리13대학 사법 박사과정)

노동법원(Conseil de prud'hommes)의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노동법원에 접수된 노동자와 고용주 간 분쟁접수 건수는 15만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직전연도와 비교해서도 18.7%나 줄어든 수치이다. 특히 사건 수가최고점을 이르렀던 2009년에 비하면, 7년 사이에 무려 35%가 하락한 셈이다.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프랑스의 경기가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분쟁이 사라지기라도 한 것일까? 마크롱의 취임 전후로 회복되고 있는 경제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하다. 중소기업총연맹(la Confédération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의 리차드 뮤스카텔 (Richard Muscatel) 대표 역시 경제상황 개선으로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해고가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전체 사건 수 감소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6년 노동법원에 접수된 경제적 사유로 이뤄진 해고에 대한 노사분쟁사건은 고작 1,502건이었다. 한편, 동년도노동자의 개별적인 사유(노동자의 과책(faute), 직업능력 부족)로 인한 해고는 119,000건이었다.

■ 2016년 프랑스 노동법원 현황

구체적인 분쟁 현황은 2017년 프랑스 법무부(ministère de la Justice)가 발간한 2016년 사법연감(Références statistiques Justice année 20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보고서

에 따르면, 2016년 노동법원에 회부된 총 사건 수는 본안사건과 가처분사건을 합해 총 14만 8,200건이었다. 해당 결과는 2015년과 비교해 약 20% 가까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 중 96%는 일반 노동자에 의해서 제기된 사건이었고, 나머지 사건은 도산절차를 겪고 있는 사용자, 수습근로자 또는 별도로 보호받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의해 제기된 사건이었다. 2016년의 사건 수 통계는 원고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모든 분야에서 그 감소세가 뚜렷했다. 94%의 사건은 노동계약 파기와 관련되어 있다. 사건 10건 중 8건은 노동계약 파기 중에서도 개별적인 사유가 원인이었다. 경제적 이유로 발생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1.1%에 불과했다. 다섯 건 중 두 건은 산업 분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다섯 건 중 한 건은 상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남성이 원고인 사건이 전체 60%를 차지했고, 분쟁사건에 소송당사자로 참여한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39세였으며, 50세가 넘는 노동자도 27%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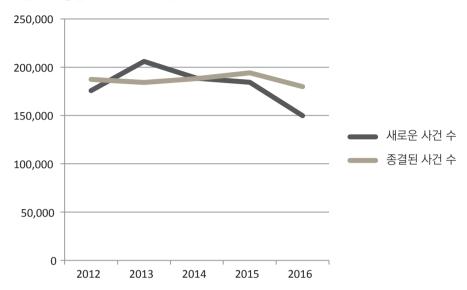
한편, 2016년에는 총 17만 2,400건의 선고가 이루어졌다. 판결로 끝난 사건은 전체의 절반 정도인 8만 9,900건이었다. 1만 3,400건의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아무런 재판 없이 종결되었다. 7%의 사건은 노동법원 조정국(bureau de conciliation)에서 3 개월 이내에 해결되었다. 조정이 실패하고 판결로 간 69%의 사건은 평균 17개월이 소요되었다. 나아가 노동법원에서 의견이 나눠지면서 결정이 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 30개월이 소요되었다.

항소심으로 향한 사건 역시 5만 8,700건에 달했다. 이 수치는 오히려 2015년보다 1.1% 증가한 수치이다. 그렇지만 항소심은 2015년보다 7% 더 많은 5만 4백 건의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전체 계류 사건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2015년 1심에서 선고된 사건 중 67.8%의 사건이 항소심의 문을 두드렸다. 이는 2014년 과 비슷한 수치이다. 항소심 사건 중 30%에 대해서는 본안에 들어감이 없이 바로 1심을 확정했으며, 이로써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그 확정적인 결과로 굳어졌다. 항소심이 본안을 판단한 3만 5,200건의 사건 중, 30%의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1심)의 재판을 그대로 유지했고, 50%의 사건은 부분적으로 변경했다. 나아가 원심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은 재판도 2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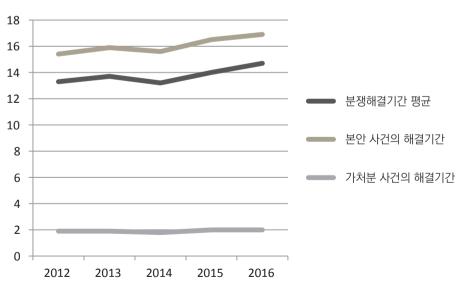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듯이 2013년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0만 건에 이른 반면, 2016년 사건은 15만 건에 미치지 못했다. 나아가 법원은 계속해서 연간 18만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비율

[그림 1] 노동법원의 사건 수 추이(2012~16년)



[그림 2] 노동법원의 사건 해결 기간(2012~16년)





로만 따졌을 때엔 완전히 파격적인 감소수치는 아니지만, 사법운영 측면에서 처리 사건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이는 곧 판사에게는 개별 사건마다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당사자에게는 더욱 빠른 결론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사건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별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건의 난이 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그동안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분석이다.

■ 노동분쟁 사법개혁의 시작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 속에는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온 프랑스 정부의 고민이 숨어 있다. 노동법원 절차에 정통한 한 사법관에 따르면, 소송절차 지연 문제가 각종 제도를 도입하게 된 원인이었다. 당시 법원은 넘쳐나는 서류 속에서 표류하며, 만성적인 소송 지연 문제를 겪고 있었다. 특히 파리 지역에서 이 문제는 심각했고, 노동자들은 지나친 소송기간 때문에 소 제기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

■ 재판 외 분쟁 해결의 원칙

노동문제를 둘러 싼 프랑스의 사회적 분쟁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것은 결코 아니다. 프랑스 사무직조직연맹(CFE-CGC)의 노동 고문 제라드 베아르(Gérard Behar)는 "젊은 노동자는 회사를 쉽게 이직하고 조합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분쟁의 쇠퇴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의 출현에 따른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작년에도 올해도 파업과 시위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결국 재판상 분쟁의 감소는 재판 외 분쟁의 해결 방안이 효율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건 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개별약정을 통한 노동계약 해지의 도입을 꼽는다. 2017년 법무부 보고서에서도 사건 수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2008년에 도

입된 노동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원칙'을 든다. 이 제도는 도입 이후 계속해서 더욱 더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승인된 노동계약합의해지 건수만 해도 무려 42만 1천 건이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마크롱의 노동법 개혁을 통해 더욱 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원 사회부의 피에르 배이(Pierre Bailly) 역시 2017년 9월 '법률, 특히 노동관계의 예견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한 2017년 9월 22일자 명령 제2017-1387호의 적용 이후에 이러한 감소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해당 법률 개정으로 해고보상금의 상한이 정해지면서, 노동자는 분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률의 이름처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발생조차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로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보상금이, 반대로 해고된 노동자로서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대화는 예전처럼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실업수당 보장제도가 정착되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더욱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진입은 어렵고, 진행은 쉽게

이어서 두 번째 이유로는 '2015년 8월 6일 개정'이 손꼽힌다. 최근 법무부 장관에 의해 간편화되긴 했지만, 「성장, 활동 및 동등한 경제적인 기회를 위한 법률」은 노동법원에 제소하기위해 매우 복잡한 행정서식을 완성해야 하는 의무를 당사자에게 부과했다. 소송 초반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수는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으로 다가간다.

이러한 복잡성의 증가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노동자에게 점점 더 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1심 절차에서 변호사의 선임은 강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낮은임금을 받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소송비용 지원을 받는 소송구조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노동자의힘(FO)의 디디에 포트(Didier Porte)는 "분쟁 신청 감소가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이유는 소송절차의 복잡화로 인한 감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처럼

법원의 진입 문턱을 높임으로써, 노동법원의 사건 수는 더욱 더 감소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사법개혁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6년 5월 20일자 데크레 제 2016-660호 제29조를 통해 2016년 8월부터 노동사건의 2심 절차인 항소법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해당 개정 이전에는 노동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로 이 원칙이 바뀌었다(노동법전 시행령 제1461조의2 제2항). 이로써 항소심의 소송진행은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되었다. 다만,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른 항소율의 변화는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편,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제559조 제1항은 "항소권을 지연 혹은 남용의 목적으로 행사하는 자에게는 최대 3천 유로까지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제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남용에 대한 제재가 있고 사법법원 역시 해당 조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변호 사는 자신의 고객의 이익을 위해, 고객이 항소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노동사건의 감소인가? 노동감독의 감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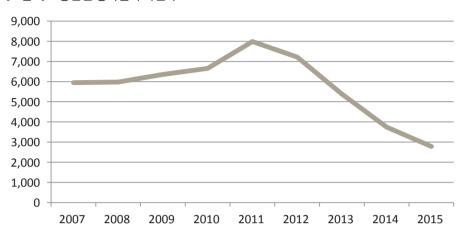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발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바로 10여 년 동안 20% 이상 감소한 노동감독의 효율성이 노동사건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노동사건 관련 형사절차는 2007년 6천 건 미만에서 2012년에는 7천 건을 넘어서며 급증했으나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며 2015년에는 3천 건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이는 감독관 1인당 사건 개입 숫자가 2007년 161건이었던 데 반해, 2015년엔 92건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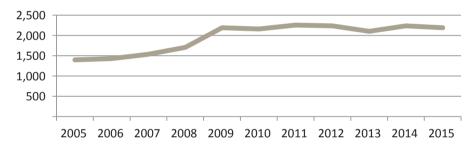
이러한 논란에 대해 2018년 3월 12일 노동부 장관 뮤리엘 페니코(Muriel Pénicaud)는 최근 몇 년간 감독의 효율성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통계에 따른 수치는 그의 주장과 배치되고 있다.

2010년 1,482명에 달했던 근로감독사무관(contrôleur)은 2015년 말에는 992명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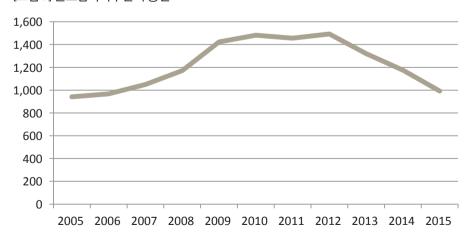
[그림 3] 노동관련 형사절차 사건 수



[그림 4] 노동감독관 총원 (근로감독지휘관과 근로감독사무관 합산)



[그림 5] 근로감독사무관의 총원



했다. 하지만 근로감독사무관보다 높은 직급인 근로감독지휘관(inspecteur)의 숫자는 같은 기간 775명에서 1,196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숫자가 2,257명에서 2,188명으로 69명 감소했지만, 이는 3%에 불과한 감소치이다.

문제는 최근 변화된 근로감독지휘관과 근로감독사무관의 비율 역전에 있다. 효율적인 근로감독을 위해 2006년에 근로감독사무관 700명을 추가로 임명하기로 했지만, 2013년 사팡 (Sapin) 개혁에 따라 근로감독사무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2009년 대비 2016년 사건 수의 감소율(35%)은 근로감독사무관의 감소와 유 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사법개혁의 완벽한 성공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프랑스의 사법개혁은 이상적으로 성공했다. 노동사건과 관련된 범죄율은 실질적인 감독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당사자들은 자발적이고 우호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몇 가지의 제도 변화를 통해 이상하리만 치계속 노사분쟁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낮은 직급에서 실질적인 감독을 하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킴으로써 더 효율적인 노동 감독을 이뤄냈다는 주장도 주목할만하다. 물론,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사건의 감소는 단지 정부의 노동감독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어쨌든 이유도 알 수 없고, 방향이 바람직한지도 알 수 없지만, 프랑스 정부의 신속한 소송을 향한 노력은 타당해 보인다. **[201**]

참고문헌

- · Le Monde, 2018년 1월 30일자, "Les recours aux prud'hommes en chute libre depuis 2009",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8/01/30/les-recours-aux-prud-hommes-en-chute-libre-depuis-2009_5249081_823448.html
- ._____, 2018년 3월 2일자, "Assurance-chômage: Muriel Pénicaud veut aller «plus loin»", http://www.lemonde.fr/gouvernement-philippe/article/2018/03/02/assurance-chomage-muriel-penicaud-veut-aller-plus-loin_5264467_5129180.
- ._____, 2018년 3월 21일자, "Réductions d'effectifs à l'inspection du travail : ce que disent les chiffres", 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8/03/21/reductions-d-effectifs-a-l-inspection-du-travail-ce-que-disent-les-chiffres_5274376_4355770.html
- · 2017년 프랑스 법무부(ministère de la Justice), 2016년 사법연감(Références statistiques Justice année 2016), http://www.justice.gouv.fr/statistiques-10054/references-statistiques-justice-12837/
- · Agathe AUMONT et 16 autres, Guide des procédure d'urgence, LexisNexis, 2017.